

2026년 전문가 육성을 위한 교육(농촌마을리더)

농촌공간재구조화법의 이해와 정책방향

2026. 7.

백금철 前 농촌재구조화지원센터장 ·
kcbaik@gmail.com

이 시간의 목표



1

왜 생겼나

법이 다루는 농촌 문제와 패러다임
전환 이해



2

무엇인가

핵심 개념 정리



3

현장 연결

주민참여·중간지원조직·정책 기회로
연결

중간지원조직·활동가의 법 이해 필요성

계획 수립은 행정, 현장 실행·주민 연계·사업 종료 후 운영은 중간지원조직·활동가의 역할



행정과의 협의

특화지구·협약 이해 시 행정과 동일
언어로 협의 가능



주민 지원

제도 이해 시 주민 아이디어를 계획 반영
형태로 전환



사업 지속

계획·사업 구조 이해 시 종료 후 운영
까지 설계 가능

농촌의 현실 — 비움과 채움의 동시 진행

비움(인구공동화)과 채움(난개발)의 동시 발생

저출생·고령화·청년유출로 인구 감소. 동시에 주거지 옆 공장·축사·태양광의 무질서한 입지. 한 마을에서 두 현상 병존.



58%

공장

주거지 300m 내



48%

축사

주거지 300m 내



37%

태양광

주거지 300m 내

자료: KREI(2019), 주거지 300m 내 위해시설 분포

기존 방식의 한계

그동안 사업 부족이 아닌 **연계 부족**이 문제. 다수 사업이 개별 추진되어 공간 위 효과 미누적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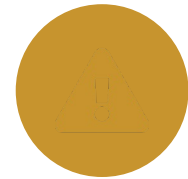
분산된 사업

부처·부서별 개별 발주·집행, 연계 부재



흩어진 효과

점적·분산 투자, 공간 변화 미누적



빠진 운영

시설 조성 후 운영주체·재원 부재로 방치

사업 중심에서 공간 중심으로

기존 — 사업 우선

- 사업 메뉴에 마을을 맞춤
- 부서별 분산, 연계 부족
- 효과의 공간 누적 안 됨
- → 난개발·중복·공백



전환 — 공간 우선

- 공간 단위 과제 도출
- 거점·축·권역 통합
- 사업을 이행수단으로 연결
- → 정합적·지속가능 발전

법이 지향하는 농촌 — 삶터·일터·쉼터

난개발·지역소멸 위기 대응, 농촌공간 재구조화·재생, 삶터·일터·쉼터로서 농촌다움 회복



삶터
정주여건



일터
경제기반



쉼터
휴양·여가

전체 그림 한눈에 보기

농촌공간 기본방침	국가·10년 국가 전체 방향 제시
농촌공간 기본계획	시·군·10년 지역 청사진 — 특화지구 포함
농촌공간 시행계획 농촌특화지구계획	시·군·5년 지구 구체화 (2026 개정 간소화)
사업 시행	시·군·주민·활동가 협약·주민제안으로 현장 실행

활동가의 자리

아래로 갈수록 구체화.
활동가는 실행 단계 중
심, 주민제안으로 상위
계획에도 영향.

재생활성화지역 — 집중 대상 구역



개념

예산을 분산하지 않고 변화 필요성·효과가 큰 구역에
집중 투자하는 구역

→ 활동 무대 설정의 출발점

의의

- 선택과 집중으로 체감 변화 창출
- 거점·축·권역으로 효과 연계
- 주민과 공간 개선 방향 공동 설계

농촌특화지구 — 구획·집적·지원

유사 기능을 한 구역에 구획(zoning), 관련 시설 집적 후 규제완화·우대지원하는 구역



구획

주거·공장 혼재
갈등 분리



집적

시설 집중,
효율·연계 강화



지원

규제완화 +
우대지원

특화지구 8개 유형 (7 → 8개 확대)

보전·관리형

 농촌마을보호지구

 경관농업지구

 농업유산지구

재배치·집적형

 농촌산업지구

 축산지구

 농촌융복합산업지구

 재생에너지지구

신설

 특성화농업지구

NEW

특성화농업지구 신설(2025.11.4) — 논
타작물·친환경 등 특화작물의 지구 단위 계
획·생산

2026년 개정 — 절차 간소화

2026.5.7 국회 통과 · 6.16 공포 · 12.17 시행.



대상 확대

농촌 보유 자치구도 계획 수립 가능
→ 활동 지역 확대



절차 간소화

시행계획 없이 특화지구계획만으로
지정 → 착수 가속



현장 효과

지정·착수 기간 단축 → 주민 아이디어
조기 실현

추진체계 속 활동가의 좌표

농촌공간계획은 행정·주민·활동가 세 주체의 협업 구조로 작동



농촌협약 — 국비 연계 통로

정부·사·군 간 약속. 정부가 지원 가능 사업을 메뉴로 제시, 사·군이 필요 사업 선택, 5년간 최대 400억 원 통합 지원



정부
지원 가능 사업
메뉴 제시



농촌협약
필요 사업 선택·
투자·분담 협의



현장 실행
계획의 사업·예산
현실화

주민참여 — 활동가의 핵심 무대

법이 마련한 상향식 계획 3대 장치, 운영 주체는 활동가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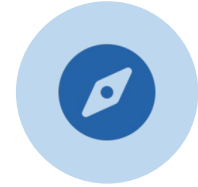
주민협의회

주민이 현안 논의·재생사업 발굴하는
협의체 — 활동가가 구성·운영



주민협정

경관·환경·빈집 등 이용 규칙을 주민
이 정하는 약속 — 활동가가 합의 유
도



주민제안

주민이 계획·지구 지정을 시·군에 제안 —
활동가가 제안서 정리

사례 ① 2025 주민참여 농촌공간계획 시범사업

주민이 지역 문제를 논의·해결하고 결과를 시·군 농촌공간계획에 반영하는 사업. 2025년 8개 도(경기·강원·충북·충남·전북·전남·경북·경남) 도별 1곳 추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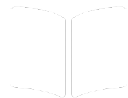
01



주민협의체 구성

이장·주민자치회·귀농귀촌인·청년 등

02



공동학습·토론

약 5개월 학습·토론회·현장조사

03



과제 발굴

지역 불편사항·해결과제 도출

04



계획 반영

결과를 시·군 계획에 반영

사례 ② 횡성 안흥면 — 2040 발전방향 수립

추진 과정 (5~12월, 8개월)

주민협의체 '안흥세대마루' 중심

- 1 사전교육 1회
주민의 제도·계획 사전 학습
- 2 주민협의체 워크숍 4회
지역 현안 파악·해결방안 토론
- 3 청소년 워크숍 1회
미래세대 시각 반영
- 4 소규모 실천활동 2건
직거래장터·청소년 프로그램 실행

성과

-  '2040 안흥면 발전방향' 수립
주민 주도 공간 청사진
-  직거래장터 정례화
실천활동의 정착
-  주민협의체 상설 운영
종료 후 운영주체 확보
-  참여 효능감 상승
지속 참여로 연결

자료: 횡성군 최종보고회(2025.12.16)

주민과 함께하는 공간계획 방법

시범사업이 검증한 방식의 현장 방법론



함께 배우기

제도·계획을 주민이 사전 학습
, 동일 출발선 형성



함께 조사하기

마을 자원·문제·위험을 주민이
지도에 표시



함께 그리기

거점·동선·쉼터를 모형·스티커로
배치, 초안 형성



함께 약속하기

주민협정으로 이용 규칙 결정,
실천활동으로 착수

중간지원조직 — 종료 이후가 핵심 역할



주요 기능

- 계획 수립 지원·자문
- 주민 역량강화·조직화
- 사업 발굴·조정·연계
- 민간-행정 가교

핵심 이유

계획 수립보다 **종료 이후 운영에서 성패 결정**. 운영주체·재원 미확보 시 시설 방치

행정이 닿지 않는 **지속운영의 공백**을 보완하는 주체 — 활동가의 대체 불가 역할

정책방향 — 「모두의 행복농촌 프로젝트」

농촌을 '농업 공간'에서 균형성장을 이끄는 일터·삶터·쉼터로 전환 (농식품부, 2025.9)



일터 만들기 소득기반

- 지역순환경제·창업생태계
- 농어촌기본소득·햇빛소득마을
- 청년농업인재·농촌형 비즈니스



삶터 가꾸기 정주여건

- 기능별 공간 차별화 조성
- 시·군 공간계획 + 특화지구 육성
- 빈집 정비·찾아가는 서비스



쉼터 되기 농촌활력

- 4도3촌 관광·체류·정착
- K-미식벨트·동서트레일
- 다시온마을·귀농귀촌 정착

법과 정책의 연결 — 삶터 가꾸기 = 농촌공간계획 실행

정책 (프로젝트)

기능별 공간 차별화 조성

시·군 공간계획·특화지구 육성

빈집 정비·난개발 관리

찾아가는 의료·생활 서비스



법·제도 (재구조화법)

농촌특화지구 8개 유형 지정

기본계획 + 시행계획(농촌특화지구계획)

농촌공간정비사업

농촌생활서비스시설 확충

활동가에게 열리는 일거리

프로젝트가 현장 활동가에게 만드는 새로운 활동 공간



다시온(溫)마을

기존주민·생활인구가 생활·창업 공간
공유 — 공동체 운영·프로그램 기획



햇빛소득마을

주민주도 재생에너지 소득 배분 —
주민 조직화·합의·운영 지원



주민주도 비즈니스

경관·먹거리·체험 등 지역자원 기반
비즈니스 — 발굴·창업·운영 동반

우리 지역 적용 — 시행계획 단계 중심으로

- | | | |
|---|-------------|--|
| 1 | 우리 지역 계획 확인 | 시·군 농촌공간계획·재생활성화지역·농촌특화지구 등 위치 및 공간발전방향 파악 |
| 2 | 주민협의체 구성 | 이장·청년·귀농인 등 다양한 주체 참여, 소규모 협의체부터 출발 |
| 3 | 함께 조사·학습 | 마을 자원·문제를 주민과 함께 지도로 정리 |
| 4 | 소규모 실천활동 | 직거래장터 등 즉시 실행 가능한 것부터 시작, 효능감 누적 |
| 5 | 제안·협정으로 제도화 | 성과를 주민제안·주민협정으로 계획에 반영, 지속화 |

마무리

오늘 기억할 세 가지

1

이 법은 '공간'을 본다

사업 분산이 아닌, 공간 단위 통합으로 농촌다움 회복

2

특화지구는 '구획·집적·지원'

기능별로 나누고 모아서 규제완화 + 우대지원. 8개 유형

3

우리가 '연결과 운영'의 축

주민참여를 조직하고, 사업 종료 후 운영까지 이어가는 주체
